

# 예산총칙

2021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| 888,709,456 | 26,661,284 |
| 일반회계           | 650,822,670 | 19,524,680 |
| 특별회계           | 237,886,786 | 7,136,604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| 237,886,786 | 7,136,604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| 11,057,854  | 331,736    |
|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  | 889,673     | 26,690     |
|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  | 229,308     | 6,879     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 | 117,884     | 3,537 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   | 7,349,399   | 220,482    |
|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| 631,721     | 18,952     |
|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  | 2,172       | 65         |
|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  | 10,928,429  | 327,853    |
|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    | 205,936,813 | 6,178,104  |
|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    | 743,533     | 22,306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사항 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"해당사항 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해당사항 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